

의안번호	제 122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1월 9일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
----------	-----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9일

발 의 자 : 이상식,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정, 하유정, 육미선

1. 제안 이유

-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3년 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4조)
-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의 위탁(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2018.12.24 ~ 2019.1.12.(20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매출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추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사업
3.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충청북도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4. 법 및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안전유지,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 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6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①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④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법 제2조 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비 및 전통시장 내 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에 따른 비용

3. 관련 조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4조) 제 1호~5호
 -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사업
3.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충청북도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4. 법 및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 대상의 정부산하기관의 화재공제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안전유지,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등

나. 추계의 전제 : 2019년도 단위사업별 지원 사업비 기준 추정

다. 추 계 결 과 : 2019 ~ 2023년(5년간)사이 세출 426억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21851%, 도비 50억(12%), 시군 144억(34%), 자담 14억(3%)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시설현대화사업외 10종	42,594,765	8,518,953	8,518,953	8,518,953	8,518,953	8,518,953

※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 별첨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이선호(220-3210)

[별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별 5개년(2019~2023) 투자계획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천원)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소 계	42,594,765	8,518,953	8,518,953	8,518,953	8,518,953	8,518,953
	국비	21,755,000	4,351,000	4,351,000	4,351,000	4,351,000	4,351,000
	도비	5,016,205	1,003,241	1,003,241	1,003,241	1,003,241	1,003,241
	시군비	14,420,485	2,884,097	2,884,097	2,884,097	2,884,097	2,884,097
	자담	1,403,075	280,615	280,615	280,615	280,615	280,615
시설현대 화사업	계	22,468,195	4,493,639	4,493,639	4,493,639	4,493,639	4,493,639
	국비	15,055,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도비	228,735	45,747	45,747	45,747	45,747	45,747
	시군비	6,467,155	1,293,431	1,293,431	1,293,431	1,293,431	1,293,431
	자담	717,305	143,461	143,461	143,461	143,461	143,461
특성화시 장 육성	계	13,0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국비	6,5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도비	1,950,0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시군비	4,550,000	910,000	910,000	910,000	910,000	910,000
	자담	0	0	0	0	0	0
전통시장 상인마케 팅교육	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시군비	0	0	0	0	0	0
	자담	0	0	0	0	0	0
향수의전 통시장 만들기사 업 추진	계	1,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3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시군비	875,00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자담	0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계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시군비	0	0	0	0	0	0
	자담	0					
전국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계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시군비	0					
	자담	0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	계	70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국비	2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도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시군비	0					
	자담	0					
우수전통 시장 선정 지원	계	22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22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시군비	0					
	자담	0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계	2,285,770	457,154	457,154	457,154	457,154	457,154
	국비	0	0	0	0	0	0
	도비	685,730	137,146	137,146	137,146	137,146	137,146
	시군비	914,270	182,854	182,854	182,854	182,854	182,854
	자담	685,770	137,154	137,154	137,154	137,154	137,1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지원	계	2,305,800	461,160	461,160	461,160	461,160	461,160
	국비	0	0	0	0	0	0
	도비	691,740	138,348	138,348	138,348	138,348	138,348
	시군비	1,614,060	322,812	322,812	322,812	322,812	322,812
	자담	0	0	0	0	0	0
온누리상 품권 기관단체 구매지원	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시군비	0	0	0	0	0	0
	자담	0	0	0	0	0	0